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10월)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주)큐에이치앤씨	박상재, 정영교	2019. 10. 2.	서울190087	강동구 양재대로96길 22, 101호(둔촌동)	300,000	
2	(주)투게더홀딩스	안영환	2019. 10. 7.	서울190088	강남구 남고개로1길 10, 421호 (수서동, 수서현대벤처빌)	300,000	
3	신방건설(주)	배재철, 신근우	2019. 10. 7.	서울190089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41, 4층(삼전동)	1,080,000	
4	(주)정연파트너스	김화태	2019. 10. 7.	서울190090	성동구 장터길 18(금호동4가)	300,000	
5	주식회사 재능홀딩스	박종우	2019. 10. 8.	서울190091	종로구 창경궁로 293	106,727,170	
6	지엠지개발 주식회사	양우석	2019. 10. 18.	서울190092	강서구 공항대로 209, 1305호	300,000	
7	(주)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	남형석	2019. 10. 24.	서울190093	송파구 송파대로 201, 에이동 1207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510,000	
8	한화케미칼(주)	이구영	2019. 10. 24.	서울190094	중구 청계천로 86	821,170,655	
9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	박성언	2019. 10. 24.	서울190095	강남구 압구정로12길 14, 5층(신사동)	5,300,000	
10	광동제약(주)	최성원	2019. 10. 25.	서울190096	서초구 서초중앙로 85	52,420,851	
11	(주)아이뱅크	정용관	2019. 10. 28.	서울190097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701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500,000	
12	㈜한미레개발	차민수	2019. 09. 24.	서울190086	송파구 송파대로 201, 에이동 지129-2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333,000	전입
13	㈜신유로지스	이준우	2019. 10. 14.	서울190063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 5, 1층 160호, 161호(월평동)	300,000	전출
14	(주)시티에비뉴	서준영	2019. 10. 16.	서울160018	강남구 논현로 520, 4층		전문인력부족
15	로지원 주식회사	강웅철	2019. 10. 23.	서울180007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1401호 (서초동, 리더스빌딩)		전문인력부족
16	(주)아일렉스아이앤디	정동준	2019. 10. 24.	서울160075	마포구 양화로 151, 6층 (동교동, 육도빌딩)		기타
17	월어스코리아(주)	장인규	2019. 10. 28.	서울100046	양천구 중앙로 181, 213호(신정동)		사업종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 467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16호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외 2필지(738-30, 738-32)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I. 열람기간 : 2019. 11. 7. ~ 11. 2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계획팀(☎ 02) 2133-6292)

III.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738-29번 지 일원	640.4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구역명	결정사유
-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② 용도지역·지구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40.4	-	640.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40.4	감)640.4	-	-	
준주거지역	-	증)640.4	640.4	100.0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면적 : 640.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③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신설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A	179.5	역삼동 738-29번지	179.5	-
		103.0	역삼동 738-30번지	103.0	
		357.9	역삼동 738-32번지	357.9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3개 필지를 단일 획지로 신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용도	지정용도(1) • 공동주택(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A) • 지정용도 외 불허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함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용적률	• 기본 400% 이하 • 상한 5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높이	• 60m 이하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및 「태해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주거지역 높이기준 준용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신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의 밀도를 결정하고자 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노면로변 3m • 이면도로변 1m	-
차량출입불허구간	• 노면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
-	• 차량출입 불허구간	노면로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면로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라.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신설)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10% 이상	10.42%	-
비주거비율	15% 이하	14.00%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주택규모	• 공공임대 : 45㎡ 이하 • 민간임대 : 60㎡ 이하	• 공공임대 : 17.91㎡, 18.22㎡(원룸형) 30.17㎡, 30.27㎡(신혼형) • 민간임대 : 15.86㎡, 17.91㎡, 18.22㎡, 20.01㎡, 22.49㎡, 20.78㎡, 22.27㎡(원룸형) 30.17㎡, 30.27㎡(신혼형)	전용면적
건축물형태	• 2가지 사항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2가지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시설	100㎡ 이상 설치	100.43㎡	지상 2층 지상 13층

마.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내용		비고
	기준	계획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10% 이상 64.04㎡	10.42% 66.7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연면적)	320.20㎡	326.15㎡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